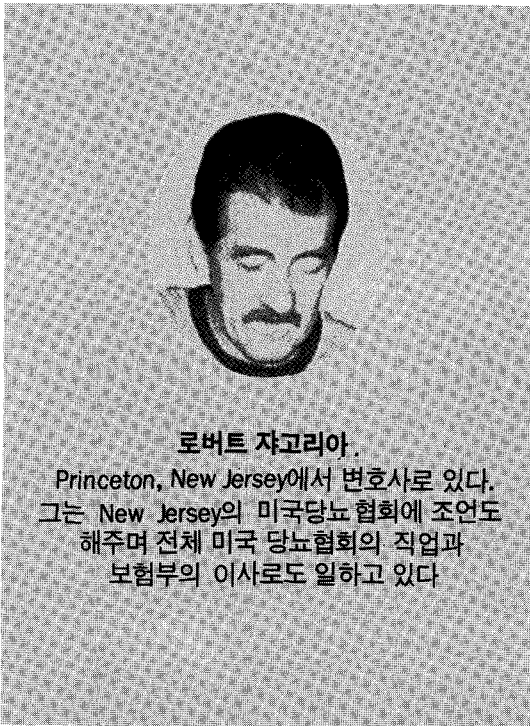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



로버트 자고리아.

Princeton, New Jersey에서 변호사로 있다.
그는 New Jersey의 미국당뇨협회에 조언도
해주며 전체 미국 당뇨협회의 직업과
보험부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당신이 선택한 직장이 당뇨병이란 이유로 제한될 순 없다

도랄드.

그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환자이지만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가끔 저혈당을 느끼곤 한다. 그의 몸은 한시간 전에 포도당이 모자라다고 신호해 왔다. 그는 이제까지 단한번도 졸도한적이 없으며

꾸준히 열성적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조선소의 간부는 도랄드가 당뇨병환자라는 걸 알자 곧바로 직장을 빼앗아버렸다.

일레인.

그녀는 능력있고 똑똑한 간호생이었다. 그녀는 인슐린주사를 맞고있지만 그 때문에 생활에 차질을 빚은 적은 없다. 그녀가 수술실에서 조금 더 많이 실습하길 담당자에게 요청했을 때, 수술실이란 병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서 인슐린투입이 필요한 당뇨병환자에게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절을 당했다. 만약 실습을 하지 못하면 일레인은 졸업을 하여도 수술실에서의 근무가 제외된다.

프렌사인.

그녀는 약을 복용하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환자인데 한 개인 우편배달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당뇨병환자라는 것이 탄로나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잃었다.

마이크.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업상품을 취급하는 유망한 판매사원이었지만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환자였다. 당시 어떤 대기업에서 그를 채용하려는 제의가 왔다. 그러나 그가 식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미국 대륙으로 떠

날 준비를 할때 그의 고용주는 그에게 고문의사의 의견을 통해 당뇨병환자는 판매사원으로 제구실을 못한다는 통고를 했다. 그 고문의사 말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있는 불쌍한 마이크는 장시간의 운전과 여관에 투숙하면서 고객들을 접대해야 하는 판매사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일들은 당뇨병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중 몇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무직이나 현장 노동자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미국 당뇨협회의 회원으로서 제일먼저 알게 되는데 야비한 이유를 들어 채용을 거부당해 왔다는 것이다.

목수가 일을 하는데 사다리를 쓰지못하게 하고 키플치 기사에게 급료가 좀더 나은 저녁근무를 취소케 하면서 고용주는 그 이유를 당뇨병 재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또 다른경우는 38살로서 미해군에서 근무하는 군인인데 아직 이른 나이에 강제로 정년퇴직을 당했다. 그 이유도 그가 당뇨병환자였기 때문이다.

일반사람들의 직장차별 피해대상자들은 남·여 인종과 연령에 차이가 없었고 당뇨병 증세로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것도 아니고 정년에 와서야 발병해 젊은 사람보다 좀 유리한 편인데도 모두 해당됐다.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반면에 충분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도



목수가 일을 하는데 사다리를 쓰지못하게 하고 키플치 기사에게 급료가 좀더 나은 저녁근무를 취소케 하면서 고용주는 그 이유를 당뇨병 재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고용주는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줄 부당한 처우만을 생각한다.

현행법

도랄드, 일레인, 프렌사인, 마이크 그리고 또다른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란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그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가?

물론 있다. 그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당뇨병환자를 위해 1973년에 설립된 연방 사회복지제도로 채택된 제5조(501, 503, 그리고 504항)에 보면 공무단체나 각 회사들 중 미국 정부로부터 2,500달러 이상의 계약이나 하청을 받은 업자들은 장애자들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당뇨병환자인 당신을 장애자로 취급해서

안됐지만 제5조 설명서에는 이것이 불가피한 이유로 직업, 승진 그리고 다른 혜택을 받지못하면 이들을 가리켜 장애자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또 제5조에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알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돼있다. 예를들면 점심시간이 1시면 12시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당뇨병환자가 인슐린을 제시간에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권리로 당뇨병이 걸린 종업원이 그병으로 인해 산업율에 폐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고용을 기피해도 된다.

연방법외에도 각 주마다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법이 당뇨병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주 정부의 법은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연방법과는 달리 각 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업체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용접사였던 도랄드를 예로들면 그의 주에서 도랄드의 권리가 착취됐다는 인권 노동부의 항의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각 주마다 법의 변동은 있다.

자기에게 이로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인권산업 보장제도나 주지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 장애자를 위한 협회의 회장에게 조언이나 책자를 구입할 수 있다. (워싱턴주) 제목은 「법과 장애자들」 이 책자는 장애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써 사람들이 알아야할 내용들이 적혀있다.

만약 연방이나 각 주의 법에 한도가 있어서 직업차별에 도움이 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라. 재능있는 변호사들은 소위말하는 「관습법」(법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일반법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최대



한으로 이용한다. 예를들면, 변호사가 확실히 고용주가 당신의 경제력을 고의적으로 빼앗아서 불행에 처하게 했다고 변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법이란 당신이 충분한 경력과 능력이 있고 당뇨병이 작업능률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연방 항공행정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 자격증은 인슐린을 투입하거나 복용하는 당뇨병환자에게는 기피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규칙상 당뇨병환자는 군에 지원할 수 없고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교통부도 대형 화물차운행은 인슐린을 주사하는 당뇨병환자에게는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이외도 각 주나 지방 경찰관도 당뇨병환자의 근무를 거절하고 있다.



법의학의 원인

법의학으로 몇가지 제외된 것을 뺀 나머지 요인들은 당뇨병환자가 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인정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 의사들이다. 고용주, 당뇨병환자 그리고 의사들 다수는 어떠한 일이 당뇨병환자에게 적합한지 책임있게 판단하질 못한다.

많은 고용주들은 만약 당뇨병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면 자기부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병으로 결근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준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들은 소위 당뇨

병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직장을 다니지말라고 권장하고 외각에서 일하면 저혈당같은 증세로 불리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당뇨병환자들은 자기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된다.

요근래에는 여러 의사들도 보통사람들처럼 당뇨병환자도 개개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시인했다. 심한 당뇨병 증세도 각개인의 저혈당 방어율과 자기의 노력과 혈기로 병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같은 당뇨병환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당뇨협회에서는 새로운 직장규칙을 도입해서 당뇨병환자에게 직장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규칙에는

「모든 당뇨병환자들, 이들이 인슐린에 의지하거나 보통환자이거나에 상관없이 남녀를 막론하고 개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당뇨협회에서는 당신에게 입사하기 전에 몇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당신은

1) 당신의 능력과 한도를 알고 있는지, 2) 당신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의사들의 조언을 듣는지, 그리고 3) 당신의 혈기와 능력을 심사숙고하여 당신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체검사를 강요하진 않지만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당뇨병이라고 밝히지않아도 되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당신의 병이 작업에 차질이 있다고 볼때

• 연방이나 주 법이 당뇨병환자들에게는 해당이 없을 때

• 회사측에서 관대하게 장애자를 채용하고 모집하고 있을 때

이럴때는 오히려 당뇨병이란 것을 숨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면 나중에 고용주에게 탄로가 나서 문제가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당신의 권리를 방어하라

불행하게도 요근래는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뇨병환자들이 직장관계로 문제



많은 고용주들은 만약 당뇨병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면 자기부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병으로 결근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준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



를 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차별대우를 받는 피해자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찾아라. 당신이 고용주하고 대화를 할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또 형식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법적으로 나설때 큰 도움이 된다.

*침착하고 합당하게 고용주하고 합의를 보도록 하라.

이방법은 일레인이란 간호생이 사용했다. 그녀는 수차례에 걸쳐 지도주임하고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마침내 수술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만약에 이러한 평범한 대화가 안통하면 고용주의 불만이 더 커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항의하라.

*당신이 만약에 노조에 가입했거나 다른 단체가 있으면 문의를 하라.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당신은 그동안 가입비를 내지 않았는가. 운전사로 근무했던 프렌사인은 노조로부터 법률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사였던 조오지란 사람도 노조의 위원장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복직했다.

*당신의 차별대우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미국당뇨협회로 의뢰하라. 이곳은 당신의 고용주와 접촉이 있었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다른회원의 경험담을 통해 당신을 도와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정부의 담당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알선해 줄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 유능한 변호사라면 당신이 골머리를 앓으며 구차스럽게 당신의 권리를 이해시키려 할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의 변호사와 협상을 하지않고 기피하면 변호사는 이 문제를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는 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주 법에 해당이 되고 저소득자라면 주 정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구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 정부에서 구해주는 변호사들은 많은 업무가 쌓여서 당신의 소송이



다소 늦어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해 경력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 자기회사를 방어할 것이다.

변호사를 무턱대고 고용하지 말고 그들의 경력이나 경비를 미리 알아보아라. 개인 변호사들은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이었던 마이크는 변호사의 덕을 보았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않은 그회사를 포기하고 다른사원들과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 취직했다. 이일은 마이크의 변호사가 그 전 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기 기전 일이다.

*당신이 연방정부나 주 정부 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평화적인 대화로 일이 안된다 해도 직접 행정당국에 법을 준수 시키라고 항의하고 필요하면 소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법에 따라 고소를 하려면 앞에 나와있는 고소법을 잘 이해해서 추진하라. 주 정부로 고소를 하려면 기관청으로 순서를 알아보아야 한다. (각 주의 법이 다르

기 때문)

정부 기관청은 소송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고소를 해야 한다. 장애자의 직업위원회 회장은 서류소송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기입하라고 말한다.(한통의 편지도 무난함)

- 1) 당신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 2) 장애자의 명칭
- 3) 차별대우한 회사이름과 주소
- 4) 구체적인 차별대우의 내용
- 5) 문제가 발생한 날짜
- 6) 소송 검사때 유리한 보충설명
- 7) 차별대우로 당신에게 손해가 된것들
- 8)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합의를 이룬것들
- 9) 이소송 문제에 대해서 차후 논의할 사람의 이름과 주소
- 10) 이문제의 계기가 될만한 자료나 서류
- 11) 당신의 서명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기 마련이므로 맘을 단단히 먹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연방과 주 정부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관공서에서

“
당신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 그리고 고용주에게
병에 대한 조사자료나
질문답변식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잘 인식시키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당신이 필요한 서류나 일의 진행에 도움이 안되면 다른 관공서를 이용해야 한다. 거의 모든 관공서 직원들은 일반국민을 위한 정보망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도움이 될 것을 물색해줄 것이다.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직업차별대우는 법이 있어도 고용주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긍정적인 방법은 사회에서 당뇨병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고용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그 값어치가 있다. 당신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 그리고 고용주에게 병에 대한 조사자료나 질문답변식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잘 인식시키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지역 당뇨병협회나 노조 또는 공공단체에 문의하라. 지난 1982년 5월 21일 뉴저저지(New Jersey)의 미국당뇨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참석한 250여명의 당뇨병환자들

은 직장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대기업의 대표들, 의사진들 그리고 정부 관리자들이 참여한 이번 모임은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상당수의 의사진들이 당뇨병환자의 권리나 능력을 알고있지만 그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직업을 개인적으로 논의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모든 이유는 법정에서 차별대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때 의사진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진들에게 흔히 물어보는 말은 “당신은 이 당뇨병환자에게 이 직업이 적합하다고 느끼는가 또, 위험성은 얼마나 따르는가?”

이 질문의 답은 한사람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나 아니면 무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판정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불필요하고 제한된 것들을 법에서 삭제해 다시 제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므로 공공단체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평생병이라고 불리우는 당뇨병으로 심한 정신적 좌절감을 안고있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당뇨병치료를 맡은 담당자들은 이들의 생각을 돌리기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모든 당뇨병환자들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저버리면 결코 안된다. (당뇨병환자들은 인슐린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우리들이 받고있는 직장차별대우는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